

제 9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가. 제 안 자 : 부 천 시 장

나. 회부일자 : '94. 11. 18.

다. 상정일자 : '94. 12. 13.

라. 의결일자 : '94. 12. 13.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보호과장

나. 내 용 :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법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된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보다 더 환경오염을 개선하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가축 제한지역에 있어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을 법정동으로 나눈 사유는?	○ 가축제한지역을 행정동으로 나누면 분동될 경우 개정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할 것 같 이 법정동으로 나누어 구분 하였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부천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전부 제한 지역으로 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 전부 제한을 하면 환경오염을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존에 가축사육 농가 보호를 위하여 전부 제한지역으로 할 수 없는 실정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오수·분뇨 정화시설 기준 강화 등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시 내 가축사육으로 인근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례로 전 의원 찬성

5. 심사결과

○ 없 음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336
의 결 년 월 일	94. 12. 21 (제33회)

제출년월일 : 1994. 12. 1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등에서 유입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된 조항을 분리·보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 시행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배출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오수정화시설 등(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시 현지확인 지도와 시설 소유자(관리자)의 사후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수질오염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함.
- 현재 부천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로 규정해 오던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정화조청소 수수료 및 과태료를 이 조례에 포함함으로써 관리의 일원화를 도모함.
- 종전 대규모의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보전법에서, 그 이하의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축산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축산폐수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함.
- 가축사육에 대한 부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축산시설과의 관련성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조례에 포함시켜 축산시설관리에 일관성을 유지토록 함.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행”이라 함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이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 함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 폐수배출시설허가 및 신고대상 외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중변소”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과, 법인, 개인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수인이 동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관리하는 변소를 말한다.
4. “개방변소”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 관리하는 변소를 말한다.
5. “가축”이라 함은 소(젖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짐승을 말한다. 다만, 애완동물 및 조류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7.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 3 조 (분뇨 등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에 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분뇨처리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함 수립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하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5 조 (분뇨수집 의무지역) 분뇨수집 의무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1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의무지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오수 및 분뇨의 처리

제 6 조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등의 설치 및 준공준공검사) ①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이하 “오수정화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공에 있어 철근배근, 배관, 노재배치, 콘크리트타설 등 주요한 공정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의 시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착공 즉시 적정설치 여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준공 후 시설관리 및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등의 준공검사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설치자로 하여금 정화조 내방[오염되지 않은 물을 채우게 하는 등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오수정화시설 등을 멸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멸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멸실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후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등의 관리) 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일 처리용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월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 200세제곱미터 미만 100세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분기별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 100세제곱미터 미만 10세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의 결과는 점검기록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등의 기능점검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술관리 대행자
2.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④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수리, 처리용량, 처리방법, 구조물의 규

적, 기계·설비 등 정화기능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한 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용도변경, 증·개축으로 인하여 유입수 또는 유입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등의 개선명령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조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중변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법인 또는 개인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장소에 공중변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방변소의 설치가 필요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합한 장소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다수인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변소 중 다음 각 호의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변소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담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유지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유료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변소 승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의 설치 승인에 관하여는 제7항 및 제8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지역별로 일정을 고려하여 분뇨를 적정하게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 10 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정화시설 등의 청소대행) ① 시장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청소를 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를 하는 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오수정화시설, 정화 등의 청소)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대하여 정기청소가 이행되도록 지역별 또는 건축물별로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오수정화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이행명령 또는 그 결과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오수정화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오수정화시설 등의 내부청소는 스크린, 기계청소, 스킵 및 침전오니 (오니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중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화조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정화효율 저하방지를 위하여 시설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반송대상오니는 제외한다.)를 수시로 농축오니 저류조에 옮겨 저장하고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한 설계도서에서 정한 유효용량별 저류기간에 따라 이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수료 등의 징수

제 12 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제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 분 뇨

분뇨수집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정화조오니

오수정화시설, 정화조의 오니청소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 (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정화조 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처리장 처리비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분뇨처리장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 및 오니의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1리터당 1원씩 처리장 처리비로 수집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 원단위는 절사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처리비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 13 조 (분뇨처리장 처리비 징수방법 등) ① 처리장 처리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1ℓ 당 1원을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할 처리비 계산금액에 10원미만이 있을 때 원단위는 절사한다.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 처리비의 납부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청소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장 처리비를 기타의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처리장 처리비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반입 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④ 처리장에서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 유지하고, 반입된 물량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 14 조 (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5 조 (분뇨처리장처리비 감면)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 처리비를 대행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처리비를 대행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 16 조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시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 17 조 (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시장은 분뇨처리 등 관련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분뇨관련영업자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관련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나 조사상 필요에 의해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와 물건 등의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18 조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을 포탈된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 4 장 축산폐수의 처리

제 19 조 (축산시설의 관리)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가축사육시설 (이하 “축산시설”이라 한다.) 대하여 연1회 이상 사육종별, 사육시설 규모 및 축산폐수처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산시설의 배출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및 중간, 준공검사)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공에 있어 철근배근, 배관, 노게배치, 콘크리트타설 등의 공정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시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 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에 있어 관계공무원은 설치자로 하여금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21 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 및 청소수수료) ①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월1회 이상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 이상

2. 방류수 수질측정

가.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월1회 이상

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3.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점검 및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의 정기점검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 대행자 또는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2. 제1항 제1호의 방류수 수질측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③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는 제12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2”를 준용한다.

제 22 조 (간이 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축산시설 중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간이 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 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5 장 가축사육의 제한

제 23 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시 전역으로 하되, 일부 및 전부제한 지역으로 구분한다. 다만 가축사육은 일부제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일부 및 전부제한 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 3”과 같다.

제 24 조 (축사의 유지관리)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 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25 조 (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 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 26 조 (적용의 배제)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제한 지역에서 행하는 경우와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일부 제한지역에서 행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산물, 도·소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 등으로 사육하는 1마리 이하의 소, 말, 3마리 이하의 돼지, 양, 5수 이하의 닭, 오리, 3두 이하의 경비전 또는 애완용 동물
5.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가축이 낳은 새끼

(이 경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 6 장 분뇨관련영업허가 등

제 27 조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영업자의 분뇨 수집·운반·청소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규업에 허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뇨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에 필요한 인력·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뇨관련영업 신규허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분뇨관련영업자의 사업기간 연장 또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사업기간 연장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4항 규정에 의한 신규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8 조 (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시미너포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기준 준수실태
2.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 여부

제 7 장 벌 칙

제 29 조 (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58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 30 조 (청문)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1 조 (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2 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 33 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관할 법원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4 조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 34 조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 35 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6 조 (행위위탁) 인접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 요청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 37 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을 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38 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39 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이 조례에서 정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부천시 물가상승률에 의거 부천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매년 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 40 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 (유료변소의 경과조치) 종전의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이 조례에 의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 4 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부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부천시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등에 의하여 행한 고시, 승인,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분뇨수집수수료

(단위 : 원)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집수수료		
		계	청소요금	처리비
분뇨	18ℓ당	181	163	18

[별표 2]

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단위 : 원)

구분	용량	계	청소요금	처리비
기본	0.75 kℓ까지	12,060	11,310	750
초과	매 0.1 kℓ당	954	854	100

[별표 3]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분	법정동명	비고
전부제한지역	원미구 : 심곡동, 원미동, 소사동, 약대동, 도당동 소사구 : 심곡본동, 소사본동, 송내동 오정구 : 원종동, 내동, 삼정동	
일부제한지역	원미구 : 춘의동, 상동, 중동, 역곡동 소사구 :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 괴안동 오정구 : 여월동, 작동, 오정동, 대장동, 고강동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표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영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고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4.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한다.
5.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말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은 법 제24조 제4항의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말한다.
6.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간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른다.
7. 과태료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에 동기와 결과, 청문실시에 따른 소명자료 등 참작하여 경감할 수 있다.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천원)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1.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법 제5조)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가) 방류수 수질기준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라)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	700	800	1,000
(2)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200	300	400
(나)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400	500	600
(다)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600	700	800
(라) 방류수 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	800	900	1,000
나. 정화조			
(1) 처리용량 10세제곱미터 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2) 처리용량 1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300	400	500
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신고대상)			
(1) 방류수 수질기준 20%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2) 방류수 수질기준 20%이상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3)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4)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을 초과한 경우	700	800	1,000
2.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			
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200	500	1,000
나. 정화조의 경우	100	200	500
3.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자 (법 제11조 또는 제26조)			
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한 경우			
(1)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0	300	300
(2)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200	200	200
(3) 축산폐수 정화시설 (허가대상)의 경우	500	500	500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2)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000	1,000	1,000
4.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사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 (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제22조 또는 제27조)			
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나.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1,000	1,000	1,000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법 제14조 제2항 또는 제28조 제2항)			
가.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 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 200세제곱미터 이상 정화조 또는 1일 처 리용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분 기별 1회 이상	100	200	500
(2) 축산폐수 정화시설 (허가대상)은 분기별 1회 이상	300	500	1,000
(3) 1일 처리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축산폐수정화시 설(신고대상)은 연1회 이상	100	200	500
나. 내부청소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화조, 축산폐 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100	300	500
(2)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의 경우	300	500	800
(3) 축산폐수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	500	700	1,000
다.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 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라.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관리일지 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대상)	500	1,000	1,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6.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 제1항)	500	700	1,000
7.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법 제24조 제2항 또는 제4항)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500	700	1,000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300	500	800
8. 영업구역·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법 제35조 제4항)			
가.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	500	700	1,000
나.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100	300	500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9.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영업자 (법 제35조 제6항)	300	500	1,000
10.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 제2항)	300	500	1,000
11.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 제3항)	300	500	1,000
12.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500	700	1,000
13.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	300	500	1,000
14.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자 (법 제45조)	300	500	1,000
15.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법 제46조 제1항)	300	500	1,000

[별지 제1호 서식]

☐ 오수정화시설

이상보고서

☐ 정 화 조

수신 :

참조 :

소유자 및 관리자 성명				전 화 번 호			
정 화 조	소 제 지						
	건물용도			정 화 조 형 식			
	인 조 수			용 량			
검 사 내 역	청소일자			방류수채취일자			
	검사일자			방류수질 (BOD)			
	검 사 자			방류수직정여부			
이 상 내 역	제1부패조	제2부패조	여 과 조	산 화 조	소 독 조	맨	홀 배 기 관
필 요 한							
조 치							
비 고							

부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정화조)을 청소함에 있어 구조 및 기능상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유료변소 설치 승인서

① 상 호 (명 칭)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주 민 등 록 번 호		
④ 주 소		(전화번호:)		
⑤ 설 치 장 소				
설 치 내 역	⑥ 대변기 (양변기)	개 (양 변 기)	남 개 (개)	여 개 (개)
	⑦ 소변기	원	⑨ 개 방 시 간	부터 까지
⑧ 1 회 이 용 료				

부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의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위생처리장사용권 일금 : ○ ○ 시 장	제 호 위생처리장사용권 일금 : ○ ○ 시 장
---	---

1. 용지규격은 192질지로 한다.
2.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으로 구분 발행한다.
3. 1권을 100매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유료변소 설치(변경) 승인신청서					처 리 기 간	
					20 일	
신청인	① 상 호 (명 칭)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번호 :)			
설치 장소	⑤ 소 재 지		⑥ 건물주용도			
	⑦ 건물연면적		m ²		⑧ 건물이용인원 (인 / 일) 명	
	⑨ 다른법령에 의한 변소의 설치의무 ☐ 유 ☐ 무					
설치 내 역	⑩ 면 적		m ²		⑪ 이용대상인원 (인 / 일) 명	
	⑫ 대 변 기	(양변기) 개	남 개	여 개	⑬ 소 변 기 개	
		(개)	개	개		
	⑭ 대변기칸의크기 (가로 × 세로)				⑮ 소 지 품 비 보 관 설 비	
○ 1 회 이 용 료		원		○ 개 방 시 간		부터 까지

부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부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변소설치장소 및 내부구조도 1부.
2. 건축물 대장 1부.
3. 대지, 건물 사용승락서 1부.(해당자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5호 서식]

오수·분뇨·정화조 멸실 신청서

대 장 번 호		명 칭	
소 제 지		전 화 번 호	
소 유 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멸 실 사 유			
정 화 조 청 소 업 체 명			

부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이 오수·분뇨 정화조의 멸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시장·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오수·분뇨 정화조 멸실신청서 1부.
2. 정화조 청소요금 계산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외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 니 년 월 일 까 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인)	

과태료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외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인)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영수필 통지서

(부천시 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외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장 귀하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영 수 증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199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성명		
외무자	주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인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장	

380mm × 180mm

(인쇄용지 투과 34g/m²)

[별지 제7호 서식]

재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의무자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과태료 부과취소 (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① 고지금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 (변경) 사유 : 년 월 일 부 천 시 장			

[별지 제10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과태료	④부과기관		⑤납부통지서번호	
처분	⑥고지받은일자		⑦과태료금액	
내역	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
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부 천 시 장 귀 하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수 신 :

발 신 : 부 천 시 장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④ 고지일자		⑤ 과 태 료 금 액	
처분내역	⑥ 부과기관		⑦ 이 의 제 기 일 자	

첨 부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